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1일,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 의원)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

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서기영 전문위원)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적재중량이나 적재용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의 소유주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어야 하나, 「도로법」상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에 의한 단속은 가능하지만, 적재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부족과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현재 과적차량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진 및 영상매체로 적재중량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영상매체를 통한 단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적재량 측정자료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해당하지 않기에 적발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¹⁾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다만,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제3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므로, ‘시·도경찰청장’으로 수정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1) “**적재중량**”이란 자동차가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설계 중량으로 총중량·축하중으로 측정하고, “**적재용량**”이란 실제 적재 한계 내에서 적재할 수 있는 최대용량으로 폭·길이·높이로 측정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